#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숭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 김승수 · 임이자 · 우재준

성일종 • 박충권 • 주호영

서지영 · 김위상 · 백승아

이종배 · 김성원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,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, 부당한 지시·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시정조치를 이행하지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 공정행위를 하더라도,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,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,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2(과징금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불 공정행위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지정 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 과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,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필요
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2(과징금) ① 문화체육관
	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
	의 불공정행위(제1호에 해당하
	는 경우는 제외한다, 이하 이
	조에서 같다)로 인하여 제34조
	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
	정명령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
	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술
	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
	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
	부과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
	과기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
	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, 불공
	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
	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
	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	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
	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
	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
	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

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.

- 1.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<단서 신설>
- 2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	<u>는 '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</u>
	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	<u> 징수한다.</u>
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	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
제.	41조(과태료) ①
	<u>.</u>
	1
	다만, 제3
	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
	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	2. (현행과 같음)
	②·③ (현행과 같음)